

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정책연구과제명	국민참여재판 배제제도 개선방안			
과제 담당관	소속(직급)	사법지원실 (형사지원심의관)	성 명	양석용
연 구 자	연세대학교 산학연구단 (책임연구원 : 한상훈)			
연 구 기 간	2019. 12. ~ 2020. 4.			
연 구 금 액	29,300,000원 (부가가치세 포함)			
계 약 방 법	<input type="checkbox"/> 경쟁입찰(협상에 의한 계약)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2회 공고 후 수의계약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수의계약			
연구결과	○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제결과와 관련된 현황 - 공식통계자료에 대한 분석 - 국민참여재판 재판부 면담 조사를 통한 분석 ○ 국가별 비교법적 검토 - 영국/ 미국/ 독일/ 일본의 배제제도(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포함) ○ 국민참여재판 배제제도 개선방안 -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방안 - 국민참여재판법 제9조 제1항의 배제사유 개정방안			
평가항목	상	중	하	
연구목적과의 부합성	○			
내용의 완결성		○		
구성, 체제의 적정성	○			
참고문헌의 충실도	○			
학술적, 실무적 가치		○		
제출기간 준수	○			
용역수행자의 성실성		○		
연구결과 활용가능성		○		

<p>평과 결과 총평</p>	<p>○ 아래와 같이 연구를 수행하여 국민참여재판 배제제도 개선방안 연구의 목적을 상당 부분 달성하였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영국, 미국, 독일, 일본의 국민참여형 사법제도(배제제도 포함)와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을 상세히 소개함 ⇨ 이를 토대로 ‘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성적 이력에 관한 증거 및 신문 배제’ 법령화를 제안하였고, 영국(2012년 법률을 개정하여 ‘중대하거나 복잡한 사기죄 사건’을 배제사유에서 삭제), 독일(심리사회적 절차동행 제도 운영), 일본[수소법원 이외 재판소로 배제결정 전담재판부 운영, 피해자 특정사항의 처리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, 배제사유로 장기간의 심판을 요하는 사건을 규정하고 이에 따른 배제결정 사례 없음(42회 공판기일, 29회 공판기일 진행한 사례 있음)] 제도 운영의 시사점을 도출함 - 현행 국민참여재판법의 배제사유에 관한 비판적 견해를 검토함 ⇨ 이를 토대로 개정 방향을 제시함(제3호 폐지하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, 제4호의 일반적·포괄적 성격 제거하고 국민참여재판 예규 참고하여 구체적·열거적으로 규정) - 국민참여재판 관련 통계의 착시 가능성을 지적함 ⇨ 배제결정의 50%가 피고인의 철회에 기인함에도 법원의 적극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음. 한편 통상절차 회부는 배제와 다르므로 배제결정의 통계자료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함 <p>○ 다만 아래와 같은 부분은 다소 미흡하여 추후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참여재판 재판부 면담 조사를 통한 제언이 추상적인 수준에 그침 - 외국 배제제도의 실무 운영 및 그 현황에 관한 연구, 검토가 부족함
<p>공개 여부</p>	<p>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공개 <input type="checkbox"/> 비공개</p>
<p>비공개 사유</p>	<p>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<input type="checkbox"/>1호 <input type="checkbox"/>2호 <input type="checkbox"/>3호 <input type="checkbox"/>4호 <input type="checkbox"/>5호 <input type="checkbox"/>6호 <input type="checkbox"/>7호 <input type="checkbox"/>8호</p>
<p>2020. 11. 16. 법원행정처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</p>	